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정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699

발의연월일: 2025. 6. 10.

발 의 자:한정애·이학영·박홍근

박지원 • 조인철 • 주철현

김영배ㆍ허 영ㆍ박수현

임오경 · 문진석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군견, 경찰견, 소방견 등과 같은 국가봉사동물은 각종 재난 현장과 치안, 국방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중대한 역할 을 수행하고 있음. 그러나 이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적절한 사육·관리, 은퇴 후 복지, 사후 예우 등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

특히, 대부분의 부처 및 기관에서 관련 예산과 인력, 시설 등이 부족하여 봉사 중인 동물에 대한 의료 및 복지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, 은퇴한 동물의 상당수는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방치되거나 사망 후 폐기물로 처리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실정임.이는 봉사동물의 공헌에 비춰 볼 때 매우 부적절한 처우라 할 수 있음.

이에 봉사동물의 사육・관리와 진료, 은퇴 후 분양 및 비용 지원,

사후 추모 체계를 포함한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, 이를 지원하기 위한 '봉사동물 지원센터'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를 위해 봉사한 동물들에 대한 책임 있는 예우와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보호를 실현하고자 함(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제1절에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6조의2(봉사동물에 대한 관리 등) ① 봉사동물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(이하 이 조에서 "관리기관의 장"이라 한다)은 봉사동물에 대한 훈련 등을 포함한 적절한 사육·관리를 하여야 한다.
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과 봉사동물의 진료 및 훈련 등에 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.
 - ③ 관리기관의 장은 봉사동물이 더 이상 봉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.
 -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봉사동물을 분양한 경우 그 분양을 받은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등 해당 봉사동물을 사육·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있다.
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봉사 중에 죽은 봉사동물을 추모하기 위한 동상, 비석 등의 기념물을 설치하는 기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 제16조의3(봉사동물 지원센터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봉사동물의

사육·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봉사동물 지원센터(이하 이 조에서 "지원센터"라 한다)를 권역별로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1. 봉사동물의 사육 관리 지원 사업
- 2. 봉사동물의 진료 및 치료 지원 사업
- 3. 그 밖에 사육 · 관리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을 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 탁할 수 있다.
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중앙행정기관의 장(이하 이 조에서 "관리기관의 장"이라 한다)은 봉사동물에 대한 훈련등을 포함한 적절한 사육·관리를 하여야 한다.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과 봉사동물의 진료및 훈련 등에 대한 협업체계를	현 행	개 정 안
이 더 이상 봉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.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봉사동물을 분양한 경우 그 분양을 받은 자에게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 등 해당 봉사동		제16조의2(봉사동물에 대한 관리 등) ① 봉사동물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(이하 이 조에서 "관리기관의 장"이라 한다)은 봉사동물에 대한 훈련등을 포함한 적절한 사육·관리를 하여야 한다.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과 봉사동물의 진료및 훈련등에 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. ③ 관리기관의 장은 봉사동물이 더 이상 봉사하기 어렵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.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따라 봉사동물을 분양한 경우그 분양을 받은 자에게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진료비용 등 해당 봉사동물을 사육·관리하는 데 필요

<신 <u>설></u>

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봉사 중에 죽은 봉사동물을 추모하기 위한 동상, 비석 등의 기념물을 설치하는 기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- -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- 1. 봉사동물의 사육·관리 지원 사업
 - 2. 봉사동물의 진료 및 치료 지원 사업
 - 3. 그 밖에 사육·관리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원
 센터의 설치·운영을 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 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

 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

 단체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

 수 있다.

 ⑤
 그
 밖에
 지원센터의
 설치

 및
 운영
 등에
 필요한
 사항은

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